



美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AI법제도센터 채은선 수석 연구원

■ 개요

- 美유타주(State of Utah)는 주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인공지능 수정법」(Artificial Intelligence Amendments, SB0149)*을 마련(‘24.03.13. 제정, ’24.05.01. 시행)¹⁾

※ 「인공지능 수정법」은 유타주 법 ‘제13편 상업 및 무역’(Title 13 Commerce and Trade)의 일부개정법률로서, 신설 규정인 제13편제2장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 및 제13편제70장 ‘인공지능정책법’ 등으로 구성

〈*유타주 법 체계 개관〉

▶ (유타주 법 구성) 총 94개의 편(Title)*으로 구성

▶ (입법상 특징) 연방 또는 주의 법 입법 시, 기존 법 체계상 조(article), 장(chapter)의 개정 또는 신설에 해당되더라도 ‘~ 법(act)’으로 명명
- 이러한 입법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입법체계상 ‘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 미국과 우리의 법 체계·분류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²⁾, 원문상 ‘법의 제명’을 그대로 표현하여 ‘~ 법’으로 표현

▶ (유타주 법 제13편의 구성) 제13편 ‘Commerce and Trade’는 총 67개의 장으로 구성, 다만 제 개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장의 번호가 제69장(‘24.4.25. 기준)
- 금번에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조항은 제2장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의 제12조로, ‘인공지능정책법’은 가장 마지막 장인 제70장으로 신설

* 예)³⁾

Utah Code

Title 3	Uniform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Act
Title 4	Utah Agricultural Code
Title 6	Assignment for Benefit of Creditors
Title 7	Financial Institutions Act
Title 8	Cemeteries
Title 9	Cultural and Community Engagement
Title 10	Utah Municipal Code
Title 11	Cities, Counties, and Local Taxing Units
Title 12	Collection Agencies
Title 13	Commerce and Trade
Title 14	Contractors' Bonds
Title 15	Contracts and Obligations in General
Title 15A	State Construction and Fire Codes Act
Title 16	Corporations

■ 주요 내용

1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고지(유타주 법 제13편제2장제12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 데이터 학습, 텍스트·음성 또는 시각적 방법으로 사람과 상호작용, 사람의 감독이 없거나 제한적인 감독 하에 사람이 만들어 낸 결과와 유사한 결과물을 즉석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1) <https://le.utah.gov/~2024/bills/static/SB0149.html>

2) 미국 연방 및 주 법 체계, 법의 편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신영수, “미국 법전의 편제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 677~708면.

3) <https://le.utah.gov/xcode/code.html>

- (사전 공개) ‘규제 직종’(regulated occupation)* 종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①구두로 대화하는 경우 대화를 시작할 때 구두, ②서면으로 소통하는 경우 소통 전 전자메세지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함’을 상대방에게 고지
 - * 회계사, 건축가, 치료사, 건강관리 전문가 등 자격(License) 또는 주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직종
 - ‘규제 직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규제 대상 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허
- (요청에 따른 공개)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clear and conspicuous) 고지
 - * 전화통신판매, 자선기부, 부채관리서비스, 웹사이트에서의 티켓 판매, 소비자 프라이버시, 소셜미디어, 신용 서비스 등 대부분의 소매 및 서비스 업종(제13편제2장제1조: U.C.A 13-2-1)
- (처벌) 각 ‘소비자보호 분야’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공개의무 위반의 경우 최고 2,500USD의 과태료(administrative fine)를 부과하고, 집행 목적의 소송 제기 가능
 - 행정명령 또는 법원명령 위반의 경우 민사상 벌금(또는 금전적 제재)으로 위반 행위당 5,000USD 부과, 법무장관이 타부처 장관을 대신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과 가능

2 인공지능정책법(제13편 상업 및 무역의 제70장, 2025년 5월 1일 폐지(한시법))

○ 상무부에 AI정책사무소(Off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이하 ‘사무소’) 설치·운영

- 상무부의 총괄국장이 사무소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소장 임명
- 사무소는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learning laboratory program, 이하 ‘프로그램’) 수립 및 관리, 관련 규칙 마련, ‘기업 및 노동 임시위원회’(Business and Labor Interim Committee)에 관련 보고 등의 임무* 수행
 - * (임무) ① 프로그램 수립·관리, ② 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규제 관련 협의, ③ 프로그램 참가 절차·요건·비용 등 규칙 마련, ④ 매년 ‘기업 및 노동 임시위원회’에 연구의제,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및 관련 법 개정 사항, 운영 결과 등 보고

○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 수립·운영

- (운영 취지·목적) 사무소는 인공지능 혁신·개발 장려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Regulatory mitigation) 혜택 제공
 - (운영 목적) ①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이익, 영향 및 정책적 의미를 분석·연구, ②인공지능 기술 진흥, ③기업과 함께 인공지능의 현재·잠재적 또는 제안된 규제의 효과·실행 가능성 평가, ④인공지능에 관한 입법 또는 규제에 관한 개선사항·권고 도출

- **(연구의제 선정)** 사무소는 인공지능 연구의제* 선정, 연구의제 설정 시 관련 기관, 선두 기업, 학술 기관, 해당 분야 관련 지식·경험·전문성을 갖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 *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 의제는 인공지능 응용, 위험 및 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가 선정
- **(참가자 선택 기준)** 사무소는 참가자(초청 또는 신청) 선정 시 ①연구의제와의 관련성, ②연구의제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 ③그밖에 사무소가 정한 사항 등 고려
- **(참가 절차)** 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신청자’)는 사무소가 마련한 기준 및 규칙에 따라 ‘규제완화’ 신청
 - ② 신청자는 규제완화를 승인받기 위해 ‘자격 요건’ 충족을 입증

〈규제완화 자격 요건〉

- (a) 제안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 및 능력을 갖춘 것
- (b)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자원을 갖춘 것
- (c) 인공지능 기술이 소비자에게 규제 완화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 (d) 테스트하여 확인된 위험을 모니터하고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을 것
- (e) 제안한 테스트의 규모, 범위 및 기간이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한되어 있을 것

- ③ 사무소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평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협의 가능)
 - ④ 사무소 및 관련 기관 간 규제완화협약(Regulatory mitigation agreements)* 체결, 신청자가 이에 참가(협약에 따라 신청자에게 규제완화)
 - * ①참가자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 범위의 한계(이용자 수 및 유형, 지리적 한계 및 기타 이용상 한계 등), ②보호조치, ③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규제 완화 사항 등 명시
 - ⑤ 사무소가 프로그램 참가 승인
- **(참가자 의무)** 정보 제공 및 보고, 규제완화협약 상 명시적으로 표기 또는 수정되지 않은 모든 법·규제 사항을 준수
 - 사무소 규칙 및 협약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고, 모든 사고(소비자에 대한 피해, 프라이버시 위반, 승인 없이 데이터 사용 등)를 사무소에 즉시 보고
 - 사무소가 ‘보다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참가자에게 부과한 추가적인 사이버보안 감독 절차 이행
 - **(참가 결과 평가 등)** 사무소는 연구 참가 결과를 평가하고, 벤치마크 수집을 위해 참가자와 협력
 - **(책임)** 협약 또는 법·제도 요건을 위반한 자는 즉시 참여에서 제외되며,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무소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이든지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참가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재산권 등을 보유하지 않고, 연구 참여에 따른 모든 청구, 책임,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프로그램 연장)** 협약은 최대 12개월간 유효, 참가자는 종료 30일 전 연장(12개월) 요청 가능(1회), 요청 시 협약 종료 전 사무소가 가부 결정

■ 시사점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의무를 이원화하여 ①자격 또는 인·허가 직종(규제 직종)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②그 외 직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고지(요청에 따른 고지)
 - 소비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세지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약관 또는 약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이행으로 보기 어려울 것
 - 기타 직종의 경우, 소비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 요청권’을 부여했으나, 요청권 행사절차, 고지방식 등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한계
 - 다만,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분명하게’(clear and conspicuous) 고지 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프라이버시약관 또는 이용약관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는 부적절할 것임
 -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적 권리행사(손해배상 등)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관 정부부처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및 법원명령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또는 금전적 제재) 부과를 명시하여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
- 특히, “자격 또는 인·허가 없는 자가 규제 직종의 서비스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13-2-12(4)(b))라고 명시하여, 자격 또는 인·허가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해당 직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화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전문적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인공지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자격·자격제도의 정비·발전 방향 연구 필요
-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은 규제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개발자들에게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은 2019년* 유타주가 금융분야에 대해 신상품 테스트에 필요한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공지능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⁴⁾
 - * 이후 유타주는 금융에 한정하지 않은 일반제도로써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마련⁵⁾

4) Caitlin Andrews, “Private-sector AI bill clears Utah Legislature”, 2024.4.6., <https://iapp.org/news/a/utah-brings-gen-ai-into-consumer-protection-realm-with-bill-passage/>

5) <https://business.utah.gov/regulatory-relief/>

- 다만, AI정책사무소 및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이 포함된 「인공지능정책법」의 기한이 2025년 5월 1일로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 연장 신청의 효과, 프로그램의 상설화,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책의 변화 주시 필요

○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입법 여부는 아직 불명확

- 행정명령(‘23.10.30.), 각종 지침(저작권, 특허권, 금융거버넌스, 소비자 보호 등), 인공지능 위험관리 프레임워크(2023) 및 인공지능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2022)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응
- 주정부 차원에서는 코네티컷 및 콜로라도가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 관련 입법, 시(市)정부 차원의 「자동화된 채용 결정 도구 법」(Local Law 144 of 2021, 뉴욕시, ‘21.12. 제정, ‘23.07.05. 시행⁶⁾) 등 관련 입법이 있었으나,
 - * (코네티컷) 「인공지능과 관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법」(‘23.07.06.)⁷⁾, (콜로라도) 「프라이버시법」,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명시(‘21.07.07.)⁸⁾
- 민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입법으로는 최초의 입법

6) 「Automated Employment Decision Tools(AEDT)」, <https://www.nyc.gov/site/dca/about/automated-employment-decision-tools.page>

7) 「Act Conc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Personal Data Privacy」, https://www.cga.ct.gov/asp/cgabillstatus/cgabillstatus.asp?selBillType=Bill&bill_num=SB01103&which_year=2023

8) 「Colorado Privacy Act」, https://leg.colorado.gov/sites/default/files/2021a_190_signed.pdf

디지털 법제 Brief

기 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본부
 AI법제도센터
작 성 : 채은선 수석 연구원
발 행 일 : 2024년 4월

1.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